

제정 2003. 7. 26

개정 2017. 1. 20

개정 2020. 4. 28

개정 2020. 12. 23

선 거 관 리 규 정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시책에 적극협조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감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 이라 함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중립의무)

조합직원, 선관위원회 등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선거원칙)

- 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직접투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사의 대표가 투표한 경우
 2. 조합원 소속 임·직원에게 한하여 대리투표한 경우<개정 2012.04.28.>
 3. 정관 제21조에 따라 총회를 서면으로 결의하기로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대면 서면투표 절차로 하는 경우<개정 2020.12.23.>

제5조(선출대상)

이사장직 및 감사직은 본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의하여 부이사장직 및 이사직을 선출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선거인명부 확정일 당시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투표 전에 사업등록취소, 폐업, 조합원 탈퇴·자격상실 등 자격변동이 된 조합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제7조(선거권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이 규정위반으로 인해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조합원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

제8조(피선거권)

선거개시일 당시 조합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되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제9조(피선거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단, 과실범은 예외로 한다.
2. 이 규정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력이 있는 자(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포함)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 ① 선관위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운영위원 5인 이내
- ② 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한다.

제11조(선임과 해임)

- ① 선관위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은 선임된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한다.
- ④ 선관위원이 정관에 의한 선출직에 입후보등록하고자할 경우 선관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선거관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총괄·관리하며, 변경·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2(권한)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해 직권으로 조사, 검색, 의뢰, 수집, 청문 등을 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4조(선거기간)

- ① 선거기간은 20일로 한다.
- ② 서면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신·수신 등을 위해 12일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투표용지 발·수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선거기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15조(선거일)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임기만료 전
- ② 보궐선거에 의한 선거일 - 정관 제11조 준용
- ③ 재선거에 의한 선거일- 선관위에서 재선거 결정 후 총회를 개최하는 날
- ④ 서면투표에 의한 선거일-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총회로 지정한 날

제 5 장 선거인 명부

제16조(명부작성)

-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서면결의로 투표하는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 경과 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이름·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명부열람)

선거인 명부작성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의 편익과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요구 시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이의신청과 결정)

- ① 선거권 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 5일전까지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 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을 시에는 그 뜻을 통지한다.

제19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선거일 전에 자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알리는 방법은 제17조와 같다.

제 6 장 후보자

제20조(후보자 등록)

- ① 입후보자 등록은 선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마감일 당일 18:00까지 할 수 있다.
- ② 입후보자 등록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에서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등록신청서(소정양식) - 필수
 2. 이력서(소정양식) - 필수
 3. 조합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조합 발행) - 필수
 4. 공약 및 소견서(소정양식) - 필수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소정양식) - 선택

제21조(예외규정)

입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1명을 추대 또는 복수로 입후보자를 추천하여 경선에 임하도록 한다.

제22조(등록무효)

-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판명될 때
 2. 선거전 규정위반으로 등록무효 결정을 받은 때
 3. 타 운수단체의 장으로 있는 자.
- ② 후보자등록의 무효를 결정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제23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입후보 등록금)

- ① 입후보자 등록금은 선거사무비를 고려하여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다.
- ② 기 납부된 등록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사무비로 사용한다. 다만, 선거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입후보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
- ③ 선거사무비 부족분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잉여금은 조합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선거운동

제25조(선거운동 기간)

- ① 선거운동은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서면투표일 경우에는 선거개시일로부터 19일의 기간까지 할 수 있으나 당 후보자의 등록 시부터 할 수 있다

제26조 삭제 <2020. 12. 23.>

제26조의2(후보자의 정보제공 의무)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 공약 및 소견서 등의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7조(이익제공 행위 등의 금지)

- ① 입후보등록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일체의 향응·기부 등의 행위 및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선거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 등을 요구 및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선거운동 금지행위)

- ① 선거운동으로 발생하는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각호의 행위는 금지한다.
 - 1. 허위사실 유포
 - 2.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사실의 유포
 - 3. 개인신상 등의 정보를 이용한 비방
 - 4. 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이용한 비방
- ② 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중립 의무자에게 적용한다.
- ③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선관위에서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 금지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한한다.

제 8 장 투 표

제28조(투표방법)

- ① 투표는 선관위에서 정한 용지에 선관위에서 정한 기표방법으로 한다.
-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투표용지상의 후보자의 기재순서)

-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의 기재순서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서로 한다.

제30조(투표의 제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 9 장 개 표

제31조(개표관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제3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표기를 한 것. 다만,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기타 선관위의 결정으로 무효로 결정된 것

제 10 장 당 선 인

제33조(당선인의 결정·공고)

- ① 2인 이상 경선 시에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2017.01.20.)
- ②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한다. 다만 재투표 후에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로

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 1인 후보 시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당선인 결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 공포 또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포 또는 공고함으로써 당선 효력이 발생한다.

제34조(피선거권의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35조(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① 이 규정 위반이 중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적위원 2/3이상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

제36조(임원 및 감사 등의 겸직 제한)

현직 임원 및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해 선출직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임기개시 전에 전 임원 및 감사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 11 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제37조(이의신청)

선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당선에 관한 이의신청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 제기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3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증거조사)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 12 장 재·보궐 선거

제41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때
2. 천재지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등으로 총회개최가 불가하여 선거가 중단된 때
3. 성원부족 등으로 총회가 미성립된 때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5.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당선 효력이 무효로 된 때
6. 기타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때

제42조(보궐선거)

- ① 이사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보궐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 장 서면투표

제43조 삭제 <2020. 12. 23.>

제43조의2(투표용지 발송)

- ① 선관위에서는 제14조 제1항의 선거기간 종료에 맞추어 조합원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등기번호 등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에서는 조합원이 투표 후 투표용지를 조합에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선관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조합원이 등록한 주사무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원이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제44조(투표지 제출 방법)

- ①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물은 반드시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 ② 투표 후 용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방법은 제1항과 같다.

제45조(투표지 수령)

- ① 투표지 수령은 우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일 전일 18:00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자가 투표지를 선관위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단서의 우편물은 제출대장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천재지변, 총회일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우편물 수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우편물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6조(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

- ① 선관위는 수령한 투표 관련 우편물을 개봉일까지 밀봉된 함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투표 관련 우편물은 개표일까지 일체 개봉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제47조(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 ① 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함 및 우편물 개봉은 개표일에 선관위에서 일제히 개봉하며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 ② 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시에는 각 조합원의 투표 내용을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개봉해서는 아니되며 투표용지에 조합원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아니 된다.

제48조(개표)

- ① 개표는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선거일에 하며 개표관리는 선관위에서 한다. 다만, 개표할 때에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다.
- ② 개표절차는 각 투표지별 유효투표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 후 투표수를 확인한다. 다만 2인 이상 선출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한다.

제49조(수령기간이 경과된 투표지에 대한 처리)

- ① 선관위에서 정한 수령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우편물은 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무효처리 한다.
- ②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종료 후 일괄 폐기한다.

제50조(금지행위)

- ① 조합원은 서면투표를 직접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효처리한다.
- ② 서면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준용규정)

선거인 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당선인,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7조의2, 제33조 내지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 14 장 별 칙

제52조(벌칙)

- ① 제3조 위반의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조합직원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처분을 받는다.
- ② 제25조, 제27조2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1차 경고(정비)
 2. 2차 경고를 받는 후보자는 등록 무효. 선거권자는 선거권 정지 1년, 선관위 및 관련 직무자는 관련 직무 해지
- ③ 제2항의 사유로 등록이 무효된 자는 4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선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7조 및 제13장의 제50조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자는 6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등록된 후보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부 칙(2003. 07. 26)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01. 20)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4. 28)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23)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